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17
----------	-----

제출년월일 : 2015. 9. 23.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 1. 폐지이유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조항이 폐지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 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  
(제정 2001.03.20. 조례 제506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2015.8.19. ~ 2015.9.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기 타 : 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5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 2006.6.15.] [법률 제7729호, 2005.12.14., 일부개정]

제6조의2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 2000.4.13.] [법률 제6135호, 2000.1.12., 일부개정]

제6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 제정, 2001.3.20. 조례 제5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사찰로서 서대문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사찰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중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 지정기준)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주변지역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주변지역 지정) ①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위치, 면적, 범위, 도면 및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목적, 사후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보·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5일이상 그 지정을 예고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변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지정예고의 경우를 준용하여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변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등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전

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주변지역의 관리) ①구청장은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주변지역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주변지역에서 건축법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는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